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82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조승래·장철민·박정현

황정아 • 박용갑 • 박상혁

이정문 · 강준현 · 박홍배

강선우 · 노종면 · 장종태

김현정 • 윤호중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 과학기술분야의 예산 조정 시에 반영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연구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의 마련을 위하여 예산확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이에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예산의 편성 및 조정에 있어서 배제되는 예외적 사유를 내우 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의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 화하고,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4항 중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을 "내우외환, 천재 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의"로 한다.

제12조의2제8항 중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 ③ (생 략)	투자전략) ① ~ ③ (현행과 같		
	<u>수</u>		
④ 정부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④ <u>내우외환, 천재지변,</u>		
<u>등 특별한</u>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의		
중장기투자전략을 과학기술분			
야의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		
산의 배분·조정 등) ① ~ ⑦	산의 배분·조정 등) ① ~ ⑦		
(생 략)	(현행과 같음)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	⑧		
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ㆍ경제상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	의 위기의		
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			
성하여야 한다.			
	- ,		
<u><신 설></u>	⑨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u>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 되도</u> <u>록 하여야 한다.</u>